

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

- 건설현장 부당이득, 국민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-

- ◆ 신속한 “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”(23.2.21) 후속조치”를 통해
상시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,
- ❶ 공사비 누수·부실시공 차단을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,
 - ❷ 건설안전 및 근로여건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.

2023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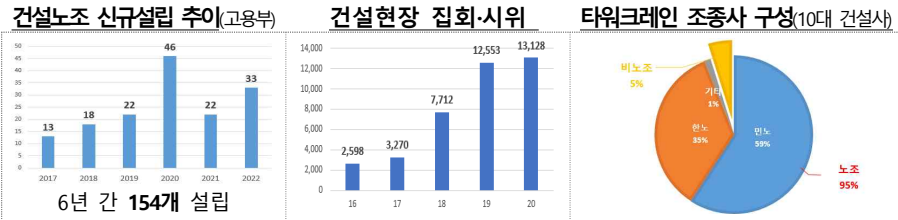
관 계 부 처 합 동

I.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및 문제점	1
II. 그간 추진상황	2
III. 현 상황에 대한 성과 및 평가	3
IV. 추진방안	4
V. 추진계획	11

I.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및 문제점

- (불법행위) 건설노조 신규설립 및 집회·시위 급증 →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**인력** 및 **장비사용 강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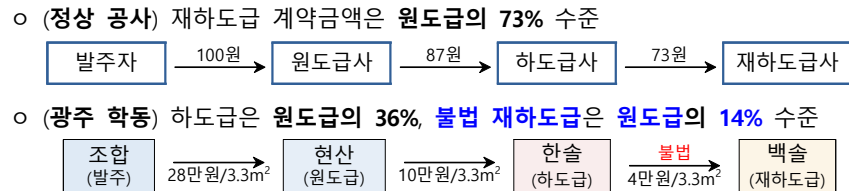
- (채용강요) 노조가 근로자 권익향상보다는 **인력공급 사무소화**
- (금품수수) 노조원을 통한 전임비, 월레비 등 **부당금품 수수**



- (구조적 문제) 노조의 불법행위는 일부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등 **구조적 문제**도 주요 원인

- (노무비)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을 통해 **저임금 인력** 투입
- (자재비) 부실시공,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**공사비 임의 감축**

<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 >



◆ 그럼에도 그간 **적발·처벌 미흡**으로 건설현장의 **불법행위 만연**

1차 피해자는 **저임금, 안전사고**에 노출된 **건설근로자**,
최대 피해자는 **분양가 상승, 부실시공** 피해를 겪는 **일반국민**

II. 그간 추진상황

1 추진상황

-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前 정부에서도 **관계부처 TF**(‘21.10)를 구성·운영하였으나,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
- 이에, 現 정부 들어 1)점검·단속 강화, 2)불법행위 차단·방지, 3)근로여건 개선 등 「**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**」 발표(2.21)

<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」 관련 V 국무회의의 모두말씀(‘23.2.21) >

“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, 채용강요,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.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.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·단속하고,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”

2 주요 추진실적

- (태업방지) 국토부는 부당한 태업을 예방하고자 「T/C 조종사 면허 정지 가이드라인(3.2)」과 「조종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(3.12)」 마련

- 이를 토대로, 전국 672개 현장 T/C 태업 특별점검 추진*(3.15~4.14)

*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조종사 54명 적발

- (특별단속) 경찰청은 「**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**」 진행 중(‘22.12~) → 총 749명 송치(구속 91명, 5.8 기준)

- (채용강요 단속) 고용부는 채용강요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추진 중 → 과태료 12건 부과(1.8억원), 사전통지 4건 진행(60백만원)(5.8 기준)

* (예) ‘22.9월 안산 현장에서 A노조는 조합원 채용 위해 집회·시위, T/C 점거농성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강요 → A노조 간부 과태료 15백만원 부과

- (채불방지) 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투명한 인력관리, 전자적 대금 지급이 가능한 **전자카드-대금지급 연계시스템** 확대(광역시·도 설명회, 3.23)

Ⅲ. 현 상황에 대한 성과 및 평가

1 성과

- **법정부적인 집중점검·단속** 등의 효과로 **채용강요, 금품요구** 등 현장에 만연했던 **불법·부당행위**는 **거의 사라졌다**는 의견(산업계)

* “지난해 대비 노조원 채용 강요 많이 줄어”, “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레비 요구 사라져”(수도권), “건설현장이 이렇게 편했던 날이 없어”(경북권)

- 또한, T/C 태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**대부분의 현장**(93.4%)에서 **평시**와 **유사한 수준**으로 작업 중

< 권역별 특별점검 현황 및 점검 결과(3.15~4.14) >

구분	현장 수	정상 작업 수준(현장소장 응답 / 평시 대비 % 비율)						
		100%	95%	85%	75%	65%	55%	50% 미만
계	672 (100%)	580 (86.3%)	48 (7.1%)	28 (4.2%)	6 (0.9%)	5 (0.7%)	3 (0.5%)	2 (0.3%)

- **건설사도 추가 조종사 투입** 등 주 52시간 초과근무 개선에 노력 중

* (사례, ▽▽건설사) 지하층 골조공사 등 T/C 작업이 많이 필요한 3개 현장에 각각 1명의 추가 조종사를 既투입(한 달 계약)하여 52시간 외 추가 작업에 활용 중

2 평가

- 산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**확연한 감소**를 반기면서도, 이러한 정부 정책의 **지속가능성**에 대해 **우려**
- 한편, 노동계 등은 관행적인 **불법하도급**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**근본적인 개선책**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

◆ 대책은 순항 중이나, **행정력에 의존한 점검·단속은 지속 불가**

⇒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의 **항구적 근절**을 위해 **조속한 시스템화** 필요

⇒ 이를 통해 부실시공에 따른 **국민 피해**와 안전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**근로자 사고위험** 경감 등 신속한 **건설현장 정상화** 필요

Ⅳ. 추진방안

- ◆ **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** 지속하고, **상시 단속체계 가동**을 위한 **제도적 기반** 구축
- ◆ **불법하도급 차단** 등으로 안전, 임금체불 방지 등 **근로여건 개선**

1 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

1 국토부, 검찰·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

① (법 집행) 채용강요, 부당금품 수수 등 집중단속

- (**상시점검**) T/C 신규 설치현장(월 200~300개)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위한 **관계부처 합동 점검** 지속
 - 특별점검(3.15~4.14)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* 추진
- * (현황) 26건은 청문 등 자각정지 처분절차 착수, 경미한 사안 등 18건은 경고조치 절차 착수 등
- (**특별단속**) ‘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 3호’로서 「건설현장 갈취·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」 진행 중(‘22.12.8.~’23.6.25)
 -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및 배후까지 철저 수사
- (**집중 점검·감독**) 채용강요 점검 및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·감독 추진(‘23.5~6)
- (**불법하도급 단속**)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**100일 집중단속**(‘23.5~8)을 통해 불법하도급 적발·처분 추진

구분	3월	4월	5월	6월	7월~
국토부	건설현장 특별점검(672개)	불법하도급(5-8월) 및 현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체계			
검찰	구속 전 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, 배후까지 철저 수사 등 엄정 대응				
경찰청	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(200일)				불법 엄정대응
고용부	상시 점검·감독	집중 점검·감독	상시 점검·감독		

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① (제재 강화) 처벌근거가 모호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마련

- (현황) 과도한 월레비 수수,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
- (개선)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확보

< 주요 법령 개정 내용 및 계획(2.21 대책 후속) >

법안명	주요 내용	추진계획
건설산업기본법	•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	'23.5월 발의
건설기계관리법	• ¹⁾ 공사방해, ²⁾ 금품요구수수, ³⁾ 운송거부 처벌 근거 * 1), 2)는 既 발의, 3) 발의 예정	'23.5월 발의
채용절차법	• 채용강요 제재수준 강화(과태료 → 형벌)	'23.5월 발의

- (조치계획) 「건설산업법」, 「건설기계법」 등 개정안 발의('23.5)

② (영상기록) 안전사고 예방 및 객관적 원인분석을 위한 영상기록체계 구축

- (현황) 현행 「건축법」 상 공사단계별 영상기록이 의무사항이나 단편적 기록에 불과하여 영상기록 활용에는 한계
- (개선) 건설 소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 ⇨ 인·허가청, 발주자에 의한 상시 감리 효과

<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개선방안 >

현 재	개 선
• 건축법 상 건축단계별 사진·동영상 기록 의무화	• 영상기록 의무 강화* 및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
• 일부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영상 기록체계 구축·관리 중	* (기록 의무) 건축단계별 → 전 과정 * (기록 제출) 주기적 → 상시 모니터링

- (조치계획) LH 시범사업(입찰조건 명기) 추진('23. 下~) 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방안 검토('24~'25)

③ (T/C 작업기록) 안전운행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

- (현황) T/C 작업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, 사고발생시 원인분석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곤란
- (개선) T/C 작업을 실시간 기록·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운행 유도 및 객관적 사고원인 분석 자료 확보

* 조정(수직, 수평, 회전 작동), 인양물 하중, 풍속, 영상 정보 등 기록 가능

- (조치계획) LH 시범사업 추진(23.5~) 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도입방안 검토('24~'25)

* (사례) OO건설사는 소관 건설현장 T/C에 작업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

④ (T/C 운영체계) 합법적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

- (현황) 원청-임대사 간 T/C 임대계약과 관계없이 하청이 T/C 작업 별도 지시 ⇨ 조종사는 추가작업, 하청은 추가비용* 부담
- (개선) 근로시간, 비용부담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 ⇨ 조종사 근로여건 개선*, 합법적 보상체계 구축

* 조종사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여 작업 가능 → 추가 작업 필요시 추가 조종사 고용

<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선방안 >

구분	현 재	개 선
근로 시간	관행적 주 52시간+α 근무	주 52시간 준수
가동 시간	T/C 당 조종사 1인 기준 (現 표준계약서 : 일 8시간, 월 200시간)	T/C 당 추가 조종사 채용 고려(1.2인 등) (例 : 일 10시간, 월 250시간 등 탄력 적용)
임금	월레비, OT비 등 관행 지급	월레비 등을 추가 조종사 채용에 활용
비용 부담	원청(장비임대료+조종사임금) + 하청(월레비, 52h초과 OT비)	원청(장비임대료+조종사임금)
작업지시체계	작업지시체계 불분명	임대사-원청-하청 간 명확한 작업지시체계 정립

- (조치계획) 운영체계 개선 합의안 도출* 및 T/C 표준임대차 계약서 마련('23.12) * 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, T/C 임대사 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

⑤ (외국인력)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

- (현황) 건설업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*로 합법적 외국인 채용 제약
 - * 1) (숙련인력 활용 애로)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, 6개월 경과 시에만 재입국 가능
 - 2) (과도한 처분범위) 1개 현장 불법인력 적발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고용제한
- (개선)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합법적 채용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 인력 부족 문제 완화

< 외국인 근로자 규제 합리화 방안 >

구분	현재	개선
재입국 소요기간	• 6개월	• 1개월 (재입국특례제도 적용)
고용제한 처분범위	• 전체 사업장 고용제한	• 당해 사업장만 고용제한

* 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과제 발굴

- (조치계획)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('22.4)에 따른 현장 적용('23.6)

2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

1 단속·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

① (특사경) 불법행위 단속력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

- (현황) 국토청, 지자체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나 수사 권한 부재, 인력 부족* 등으로 적발 한계
 - * 건설현장 연간 17만 개 이상 →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
- (개선)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

<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 범죄 >

법안명	수사 대상 범죄
건설산업기본법	불법하도급, 공사 입찰방해, 건설업 등록위반, 부정청탁, 시평조작,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^{신설} , 부당금품 수수 ^{신설} , 공사방해 ^{신설} 등
건설기술진흥법	건설Eng 부실조사·등록위반, 감리·감독 명령 위반, 품질·안전규정 위반, 감리위반, 기술보호 위반, 점검방해 등
건설기계관리법	기계 등록위반, 부정 기계검사, 무단개조, 시정명령 불이행, 면허위반, 건설기계 이용 공사방해 ^{신설} ,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^{신설} , 운송거부 ^{신설} 등

- (조치계획) 「사법경찰직무법」 개정안 발의('23.5)

② (처벌강화) 불법하도급 비용 > 이익 구조로 전환하여 불법하도급 차단

- (현황)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
- (개선) 발주자, 원청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,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차단

< 불법하도급 제재 및 관리의무 강화방안('21.8 대책, '22.3 대책 후속) >

구분	현재	개선
관리 강화	• 발주자,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의무 미흡 * 발주자·원도급사는 공가지연 우려 불법하도급 묵인하는 경향	• 발주자 및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의무 강화 • 발주자·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시 계약해지권 부여
제재 강화	• 5년내 불법하도급 3회 적발시 → 등록말소 • 불법하도급시 과징금(30%) 부과 • 불법하도급시 원·하도급사 3년 이하 징역 •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재	• 등록말소 처분 강화 • 불법하도급시 과징금 강화 • 원·하도급사 형사처벌 강화 •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

- (조치계획) 불법하도급 차단대책('21.8), 부실시공 근절대책('22.3) 후속조치 법안* 신속 처리

* 건설산업기본법('21.9, '21.10, '22.8 발의), 건설기술진흥법('21.8, '22.8 발의)

** 다만, 이해관계자 간 이견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여당에서 수정안 발의

③ (조기포착) 적발률 제고를 위해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

- (현황) 키스콘,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하여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추출*
 - * (원리) 공사대장(키스콘), 하도급보증(공제조합) 간 하도급업체 정보 상이 ⇨ 의심사례 추출
- (개선) 활용 정보, 분석 유형 확대*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 제고
 - * (정보) 키스콘·조합 → 퇴직공제, 대금지급 / (유형) 일괄·다단계 → 무자격 하도급 등
- (조치계획) 시스템 연계 확대 및 조기포착 기능 강화('23.9)

④ (감리역할 강화)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방지

- (현황) 공공공사, 민간토목공사와 달리 민간건축공사의 감리는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가 없어 불법하도급 점점에 소극적
- (개선)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 **하도급 적법 여부**에 대한 **관리 의무**를 부여(위반시 과태료)하여 불법하도급 방지 역할 강화
- (조치계획) 「주택법」 개정('23.7)
 - * 시공사로부터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('23.下)도 추진

②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

① (임금체불 방지) 전자카드제·대금지급시스템 적용 공사 전면 확대

- (현황) 투명한 인력관리,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, 대금지급시스템*이 필요하나, 현재 **제한적**으로 적용 중
 - * 노무비, 자재·장비비 구분청구를 통한 직접지급효과로 체불방지 가능
- 불법하도급 적발* 등을 위한 **양 시스템 연계**도 시범사업 단계
 - * (원리)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시스템 상 A업체 소속이나, B업체가 임금지급시 의심·점검
- (개선) **1억 원 이상 공공공사**에 대해서는 양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, **민간공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**하며 **인센티브 강화**
 - * 노무비 등 구분청구 실태 점검 및 미흡시 행정처분 조치
 - ** 노무비, 자재·장비비 직접지급효과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및 시스템 보완방안 지속 검토
- (조치계획) 대금지급시스템 및 연계 확대 : 「건설산업법」 개정안 발의('23.5)

<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방안(계속) >

구분	현 재	개 선
전자카드제	•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중(일정규모 이상) * 공공공사 : 50억 이상 - 민간공사 : 100억 이상	• 의무 대상 확대(‘24.1~) * 공공공사 : 1억 이상 - 민간공사 : 50억 이상 **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既완료

<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방안(계속) >

구분	현 재	개 선
대금지급시스템	• 임금 등의 전자적 직불 시스템을 공공공사는 전면 의무화, 민간공사는 활용 유도 중* * (인센티브)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(30%), 상호협력평가 가점(5점)	• 민간공사도 단계적 의무화 * '24.下 300억 이상 '25.下 100억 이상 '26.下 50억 이상 ** 연구용역 통해 추가 확대방안 마련('24.上) •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공사 보증료 감면 확대(30%→50%)
연계시스템	• 국토부 소속 발주기관만 양 시스템 연계 시범사업* 중 * LH 사업장 위주로 193개 현장	• (공공공사) 1억 이상 공사 연계 의무화 • (민간공사) 단계적 연계 의무화 * '24.下 300억 이상 '25.下 100억 이상 '26.下 50억 이상

② (근로계약 투명화) 정당한 개별 근로계약제도 안착으로 근로여건 개선

- (현황) 음성적 **불법 도급계약, 형식적 근로계약**(백지계약) 관행이 지속되며 건설근로자는 **저임금, 임금체불** 등에 노출
- (개선) 하도급사-팀장 / 하도급사-팀원 간 **정식 근로계약 체결**을 통한 투명한 고용구조 안착으로 건설근로자 **근로여건 개선**

<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 개선방안 >

현 재	개 선
• 하도급사 - 팀장 간 도급계약 관행 지속(과거 십장제) * 일부 현장은 팀장에게 노무비 등 전액 지급 → 팀장 재량 하 인건비, 식대, 숙박비 등 집행	• 하도급사- 팀장 / 하도급사- 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 체결 •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*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할 경우, 임금체불 방지 등 가능

- (조치계획) LH 시범사업 추진('23. 下~)을 통해 **표준근로계약서(안)** 마련

V. 추진계획

◆ 관계기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
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		
1. 국토부, 검찰·경찰청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		
① 채용강요, 부당금품 수수 등 집중단속		
2.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		
① 불법행위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* '23.2.21 대책 후속조치	건설산업법, 건설기계법 개정안 등 발의	'23.5
② 건설현장 영상기록체계 구축	LH 시범사업 추진	'23.下
③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도입	LH 시범사업 추진	'23.5
④ 타워크레인 운영체계 개편	표준임대차 계약서 마련	'23.12
⑤ 외국인력 규제 합리화	외국인정책위원회 의결 결과 현장적용	'23.6
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		
1. 단속·처벌 및 감리 의무 강화로 불법하도급 근절		
①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	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	'23.5
② 불법하도급 관리의무 및 처벌강화 * '21.8 대책 및 '22.3 대책 후속조치	건설산업법 개정안 등 발의	'23.6
③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	조기포착 기능 강화 등	'23.9
④ 감리의 하도급 적정성 관리의무 강화	주택법 개정	'23.7
2.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계약 투명화		
① 전자카드제 +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확대	건설산업법 개정안 발의	'23.5
② 투명한 개별 근로계약 체결 확대	LH 시범사업 추진	'23.下

참 고

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

법안명	주요 내용	소관	현황
건설산업 기본법	· 불법하도급, 부실시공에 따른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강화 · 불법하도급,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말소, 영업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 · 불법하도급, 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· 하도급 관리의무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	국토부	'23.6월 발의 예정
	·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· 건설현장 불법행위 규정* 및 신고포상제 도입 * 부당금품 수수,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, 공사방해 등	국토부	'23.5.11일 발의
건설기계 관리법	· 건설기계를 이용한 ¹⁾ 공사방해, ²⁾ 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, ³⁾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시 제재	국토부	1), 2)는 既발의 3)는 5.11일 발의
사법경찰 직무법	·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* (건설산업기본법) 불법하도급, 등록위반, 채용 및 장비강요^{신설}, 공사방해^{신설} 등 ** (건설기술진흥법) 품질안전규정 위반, 감리감독 위반, 건설 Eng 부실조사 등 *** (건설기계관리법) 기계 등록위반, 무단개조, 운송거부^{신설}, 부당금품 수수^{신설} 등	법무부	'23.5.11일 발의
채용 절차법	· 채용강요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(과태료 → 형벌)	고용부	'23.5월 발의 예정
노동 조합법	· ¹⁾ 他노조 및 근로자, 사용자의 권리 침해, ²⁾ 대체근로 및 사업장 점거 등 제도개편 근거 마련	고용부	1)은 既발의 2)는 '23.8월 발의 예정